

의안번호	2208886
의 퇴 인	백선희 의원
회 답 일	2025. 5. 27.
추계번호	25B142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항공안전정책기본 계획의 수립 등)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u>3의2. 항공기의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 유지와 유실 방지를 위한 장치·시스템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신설></u> ※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항공기의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 유지와 유실 방지를 위한 장치·시스템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추가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 (항공안전정책기본 계획의 수립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항공기의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 유지와 유실 방지를 위한 장치·시스템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의 전원이 손실되는 경우 조종실의 음성을 기록하는 장치가 일정 시간 동안 작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별도의 전원장치(대체전원장치) 및 항공기의 동력발생장치 손상으로 항공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적으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보조동력장치)를 설치·운용하도록 하면서¹⁾,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²⁾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항공기의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 유지와 유실 방지를 위한 장치·시스템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임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제2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2023~2027)이 시행 중이고, 해당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1억원이 집행되었음(한국교통연구원(KOTI) 수행, '22.2.~12.)

○ 개정안에 따른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 유지와 유실 방지를 위한 장치·시스템의 설치·운용 주체는 항공운송사업자이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항공기의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

1) 안 제52조의2(보조동력장치등의 설치·구축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치 및 시스템(이하 “보조동력장치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보조동력장치: 항공기의 동력발생장치 손상으로 항공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적으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2. 대체전원장치: 항공기의 전원이 손실되는 경우 조종실의 음성을 기록하는 장치가 일정 시간 동안 작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별도의 전원장치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동력장치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유지·점검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보조동력장치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여야 할 항공기, 설치·구축 기준 및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항공안전법」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안전정책의 목표 및 전략

2. 항공기사고·경량항공기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정비 및 안전성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4. 비행정보구역·항공로 관리 및 항공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 항공종사자의 양성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유지와 유실 방지를 위한 장치·시스템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이 추가될 경우, 해당 장치·시스템의 운용 기준 설정 등을 위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1] 최근 5년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 관련 연구용역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과제명	수행자	예산	계약 금액
2020	항공운송사업자 운항규정 표준화 수립 연구	한서대학교	80	77
	항공기 등록 외국인 지분제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40	35
2021	운항·객실 승무원의 업무절차 표준화 연구	한서대학교	60	58
	국제항공 탄소감축 국가이행계획 수립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60	58
2022	감항분야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 대응방안 연구	항공안전기술원	50	44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규모검사 방법 개발 연구	한국기후변화 연구원	70	67.8
2023	운항분야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 대응방안 연구	아주컨설팅, 한서대학교	120	117
2024	운항분야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연구	한국항공협회	60	59
	운항증명(AOC) 검사 고도화 연구	한국항공협회	60	57

자료: 국토교통부

- 다만, 현 시점에서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항공기의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 유지와 유실 방지를 위한 장치·시스템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의 범위, 내용, 방식 등을 알 수 없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용역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